

# 『화성특례시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참여(예비)기업 모집 공고

(Hwaseong Social Technology Incubating Program)

화성특례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환경·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화성특례시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일

화 성 시 장

## 1 화성특례시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요

### 사업목표

- 관내·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초기 창업자 발굴
- 환경·사회문제 해결 기술기반 창업 경진대회 개최로 소셜벤처 창업문화 확산

### 사업대상 : 5년미만 초기기업 및 예비창업자

※신청자격은 동 공고 '4. 신청자격 및 요건' 참조

### 지원내용 : 시제품개발비(최대 3천만원), 사무공간, HSTIP 등

### 추진일정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주최·주관 : 화성특례시

### 협력기관 : (재)화성산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재)사회적가치연구원

## 2

# 화성특례시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세부내용

### □ 서면평가 & 발표대회(Round1)

- 사업기간 : 2026년 8월~9월
- 주요내용
  - 참여 신청기업의 서면평가 후 25개 내외 참여기업 선정
  - 서면평가 통과 기업 대상 소셜벤처 집합 교육 추진 후 온라인 발표대회 추진
- 상세내용

구분	내용													
서면평가	- (대상) 온라인 신청서 제출 기업 - (시기) 2026년 8월 - (공모 분야) 화성특례시 환경·사회문제를 혁신적기술·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또는 5년 이내 창업자 ※환경·사회문제 정의: 급격한 도시 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기본서비스 공백, 기후위기 대응 수요 등 시민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제반 문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분류</th> <th>주요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돌봄 공백</td> <td>- 고령화 및 맞벌이·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 - 취약계층의 생활지원 서비스 부족 등</td> </tr> <tr> <td>(국내외)노동자 인권 및 안전</td> <td>-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의 예방적 체계 부족</td> </tr> <tr> <td>교육격차 및 성장지원</td> <td>- 다문화, 보호아동 등 지역·배경에 따른 교육경험 차이와 교육지원 부족</td> </tr> <tr> <td>에너지 전환·에너지 복지</td> <td>-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부족 및 취약계층 에너지 접근성 문제</td> </tr> <tr> <td>기후위기 대응</td> <td>- 재생에너지 지역 확산 및 생활 속 탄소감축 기반 부족</td> </tr> <tr> <td>기타 사회문제</td> <td>- 화성특례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td> </tr> </tbody> </table>	분류	주요내용	돌봄 공백	- 고령화 및 맞벌이·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 - 취약계층의 생활지원 서비스 부족 등	(국내외)노동자 인권 및 안전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의 예방적 체계 부족	교육격차 및 성장지원	- 다문화, 보호아동 등 지역·배경에 따른 교육경험 차이와 교육지원 부족	에너지 전환·에너지 복지	-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부족 및 취약계층 에너지 접근성 문제	기후위기 대응	- 재생에너지 지역 확산 및 생활 속 탄소감축 기반 부족	기타 사회문제
분류	주요내용													
돌봄 공백	- 고령화 및 맞벌이·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돌봄 공백 - 취약계층의 생활지원 서비스 부족 등													
(국내외)노동자 인권 및 안전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의 예방적 체계 부족													
교육격차 및 성장지원	- 다문화, 보호아동 등 지역·배경에 따른 교육경험 차이와 교육지원 부족													
에너지 전환·에너지 복지	-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부족 및 취약계층 에너지 접근성 문제													
기후위기 대응	- 재생에너지 지역 확산 및 생활 속 탄소감축 기반 부족													
기타 사회문제	- 화성특례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표대회 (Round1)	- (평가방법) 서면평가 위원회 개최 - (평가항목) 사회성 및 혁신성장성 평가모형 항목 -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최종평점 평균 70점 이상 -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 (대상) 서면평가 통과 기업 - (시기) 2026년 9월 - (내용) 소셜벤처 집합교육(2시간) 및 기술·서비스 PT 제안서 작성 후 발표대회 개최 - (교육) 기술보증기금 - (평가방법) 온라인 평가 위원회 개최 - (평가항목·기준) 사회적가치 추구도, 경영관리, 제품·서비스 경쟁력 - (평가기관) 화성특례시 - (절차)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margin-to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div> <div style="font-size: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기업별 PT 제안서 작성</div> <div style="font-size: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PT 취합</div> <div style="font-size: 20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온라인 발표대회 개최 및 2라운드 진출 기업 발표</div> </div>													

## □ 시장성검증 & 발표대회(Round2)

- 사업기간 : 2026년 10월 중
- 주요내용
  - 선후배 기업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검증 및 비즈니스 고도화
  - 시장검증 방법을 찾기 위한 멘토링과 사업모델 개선 방향 도출
- 상세내용

구분	내용
시장성검증 & 발표대회 (Roun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1라운드 통과 기업</li> <li>- (시기) 2026년 10월 중</li> <li>- (내용) 선배 소셜벤처기업과 파트너십 결성 후 교육1회, 멘토링 2회를 거쳐 시장검증 및 비즈니스 고도화 과제 수행</li> <li>- (평가방법) 대면평가 심의위원회 개최</li> <li>- (평가항목) 고객·수요처 정의, 문제정의 적합성, 시장 검증 방법의 적합성, 사업 모델 개선도, 비즈니스 실행 가능성 등</li> <li>- (선정기준) 심의위원 점수 최고·최저 점수 제외 후 산술평균 후 80점 이상 기업 선정</li> <li>- (평가기관) 화성특례시</li> <li>- (협력기관) (재)화성산업진흥원</li> </ul>

## □ 소셜벤처 페스티벌(Round3)

- 사업기간 : 2026. 11월 중(1박 2일)
- 주요내용 : 성인 부문, 청소년 부문으로 나눠 주제별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 성인 부문 : 해커톤 개최 후 모의 투자대회를 통해 시제품 개발비 유치
  - 청소년 부문 : 차세대 리더 발굴을 위한 청소년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 상세내용

구분	내용
성인부문 (해커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3라운드 통과 기업</li> <li>- (시기) 2026년 11월 중(1박2일)</li> <li>- (내용) 워크샵 개최 후 모의 투자대회를 통해 시제품 개발비 유치 (최소10,000천원~최대30,000원)</li> <li>- (평가방법) 대면평가 심의위원회 개최</li> <li>- (평가항목) 실증 가능성 및 혁신성, 성장성, 시제품 개발계획의 적정성 등</li> <li>- (선정기준) 심사위원 평가 후 시제품 개발비 차등 지원</li> </ul>

## □ 선정규모 : 최종 5개 기업(팀) 내외

- 선정 규모는 참여기업(팀)의 신청·개별 라운드 진출 결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

## 지원내용

**지원대상 : 공통 기준을 충족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종 입상 기업(팀)**

구분	지원 세부 내용
공통기준 (두가지 기준 모두 충족 必)	1.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Round2 종료 후 <b>2027.3.31.(수) 까지</b> 법인기업 설립 및 소셜벤처 판별 완료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성립연월일' 기준 - 소셜벤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셜벤처 판별을 받은 기업 2. 화성특례시 소셜벤처 창업지원공간에 <b>본사 설립 또는 이전 예정 기업</b>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Round2 종료 후 <b>2027.3.31.(수)까지</b> 본사 설립 또는 본사 이전 완료 - <b>화성특례시 내 현재 본사가 소재인 경우 입주 여부 선택 가능</b>

※ 공통기준 미 충족시 지원불가 및 후보기업에게 지원자격 부여

**지원내용 : 시제품개발비, 사무공간, HSTIP 등**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시제품개발비	<p>(지원사항) 시제품 제작 또는 설계비용 기업당 최소10,000천원 ~ 최대30,000천원 지원                      ※ Round3 성적 순서대로 기업(팀)별 지원 금액 결정                      (지원방식) 협약체결에 따른 100% 선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조건)                      ※ 회계정산: 화성산업진흥원 지정 회계법인 이용 및 사업비 내 비용 집행                      (지원항목) 재료비, 위탁사업비, 회계정산 수수료비</p> <table border="1"> <thead> <tr> <th>비목</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재료비</td> <td>                             · 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 양산용 재료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 사용 불가                         </td> </tr> <tr> <td>위탁사업비</td> <td>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외부 위탁비용                              · 시제품 설계(CAD) 및 목업, 금형 설계비용                              · 시제품 디자인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설계비용                         </td> </tr> <tr> <td>회계수수료</td> <td>                             · 회계정산 수수료                         </td> </tr> </tbody> </table> <p>1) 기 양산 및 판매 제품 지원 불가                      2) 인건비 지원 불가                      3) 그 외 항목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 예외사항의 경우 화성산업진흥원의 해석을 따름                      (지원·감독기관) (재)화성산업진흥원</p>	비목	세부내용	재료비	· 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 양산용 재료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 사용 불가	위탁사업비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외부 위탁비용 · 시제품 설계(CAD) 및 목업, 금형 설계비용 · 시제품 디자인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설계비용	회계수수료	· 회계정산 수수료
비목	세부내용								
재료비	· 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또는 원료 구입 비용 ※ 양산용 재료 및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재료 사용 불가								
위탁사업비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외부 위탁비용 · 시제품 설계(CAD) 및 목업, 금형 설계비용 · 시제품 디자인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설계비용								
회계수수료	· 회계정산 수수료								
사무공간	<p>(위 치) 미정                      (지원항목) 사무공간의 보증금 및 월임차료, 냉난방기 등                      - 관리비 및 주차비 미지원                      (입주기간) 최대 3년(1년 단위 평가를 통한 재계약 진행, 1+1+1)                      - 매년 12월 기준 사업성과평가 후 연장 여부(최대 3년) 결정</p>								
HSTIP (Hwaseong Social Technology Incubating Program)	<p>(지원사항)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투자연계, R&amp;D 지원                      (지원방식)</p> <table border="1"> <thead> <tr> <th>프로그램</th> <th>세부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엑셀러레이팅 (1년~2년차)</td> <td>                             · 사업대상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입상기업                              · (1차) 기술 고도화 및 투자역량 제고 국내 프로그램 운영                              · (2차) 판로개척 및 실질투자 연계 국내외 프로그램 운영                         </td> </tr> <tr> <td>투자연계 (2~3년차)</td> <td>                             · 사업대상 :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선정된 기업                              · <b>운용사 기준에 따른 초기투자 진행</b> </td> </tr> <tr> <td>R&amp;D지원 (3년차)</td> <td>                             · 사업대상 : 투자 유치를 달성한 기업                              · <b>투자금액 1:1 매칭 R&amp;D 지원(최대 1억)</b> </td> </tr> </tbody> </table>	프로그램	세부내용	엑셀러레이팅 (1년~2년차)	· 사업대상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입상기업 · (1차) 기술 고도화 및 투자역량 제고 국내 프로그램 운영 · (2차) 판로개척 및 실질투자 연계 국내외 프로그램 운영	투자연계 (2~3년차)	· 사업대상 :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선정된 기업 · <b>운용사 기준에 따른 초기투자 진행</b>	R&D지원 (3년차)	· 사업대상 : 투자 유치를 달성한 기업 · <b>투자금액 1:1 매칭 R&amp;D 지원(최대 1억)</b>
프로그램	세부내용								
엑셀러레이팅 (1년~2년차)	· 사업대상 :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입상기업 · (1차) 기술 고도화 및 투자역량 제고 국내 프로그램 운영 · (2차) 판로개척 및 실질투자 연계 국내외 프로그램 운영								
투자연계 (2~3년차)	· 사업대상 : 엑셀러레이팅을 통해 선정된 기업 · <b>운용사 기준에 따른 초기투자 진행</b>								
R&D지원 (3년차)	· 사업대상 : 투자 유치를 달성한 기업 · <b>투자금액 1:1 매칭 R&amp;D 지원(최대 1억)</b>								

## 4

## 신청자격 및 요건

### □ 신청자격

#### ○ 예비창업자

- 사업 공고일(2026.7.1.)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 사업 공고일 기준 2026년(2026.1.1.~7.1.)에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사업자 폐업(해산 및 청산)을 하지 않은 자

#### ○ 기창업자

- 사업 공고일(2026.7.1.) 기준 개인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

### □ 신청 제외 대상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①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 합의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②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③ 전국의 창업지원기관, 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 ③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 (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⑦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특정 기업의 발행주식을 전체의 50% 초과 보유한 과점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인 자

#### ⑧ 기타 화성특례시장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의무 및 역할

- Round2 종료시점 기준 최종 선정 기업(팀)은 **2027.3.31.(수)까지** 「법인 설립」, 「법인이전」, 「소셜벤처판별\*」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향후 HSTIP을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하며 「화성특례시 소셜벤처 창업·육성지원 사업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소셜벤처판별 : Round2 종료시점 기준 최종 선정 기업(팀)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셜벤처 판별기준’을 충족하고, 소셜벤처기업 판별 결과 통지서(판별결과 : 인정)를 **2027.3.31.(화)까지** 화성특례시에 제출하여야 함

※지침 및 기준 등은 최종 선정 기업(팀)으로 별도 안내

- 최종 선정 기업(팀)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최종 선정 기업(팀)은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보조금지원 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최종 선정 기업(팀)은 화성특례시와 화성산업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최종 선정 기업(팀)은 HSTIP 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최종 선정 기업 중 예비창업자가 법인으로 창업할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최종 선정 기업(팀)은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창업 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 유지 의무 미이행 시, 화성특례시·화성산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 3년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부여

## 5

##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7. 1.(수) ~ 2026. 7. 31.(금) 16:00 마감**
- 접수방법 : (연번\_서류명\_기업 또는 팀명.확장자) 형태로 파일제출**
  - 온라인 신청·접수
    - <https://naver.me/FKG4tMwe> (기창업자)
    - <https://naver.me/Gzdxvs3M> (예비창업자)
    - ※ 오프라인(대면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온라인 사업안내 : 추후 웹 포스터 내 링크 게시
    - 문의 : 화성특례시 기본사회담당관 조운상 전문관 031-5189-6155, [dscreen01@korea.kr](mailto:dscreen01@korea.kr)
-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서식		
1	참가신청서	예비창업자	기창업자	온라인 파일첨부 (연번_서류명_기업 또는 팀명.확장자)		
2	사업계획서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3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제출				
4	특허, 실용신안, 품종보호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해당 시 제출	제출			
5	대표자 이력서	제출				
6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핵심인력(팀원) 또는 기술인력(팀원) 이력서					
8	핵심인력(팀원) 또는 기술인력(팀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9	정관 또는 미션선언문	제출				
10	법인등기부등본					
11	사업자등록증					
12	결산재무제표 (2023년~2025년) 및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26. 6. 기준)				x	제출
13	4대 사회보험가입자 명부					
14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	제출				
15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3년 이내)					
16	참여기업(팀) 사업 신청확약서					
17	개인(사업장)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 기간이 마감일 이내일 시 공고일 이전 발급본도 인정)
  - 필요시 공고의 안내된 서류 외에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6

# 평가 및 선정 절차

### □ 평가 절차 : 총 4단계 평가

- 서류심사→Round1(온라인 심사)→Round2(대면 심사)→Round3(대면 심사)

#### <대회평가 일정(안)>

<b>서면평가</b> ·신청기업 서면평가 (25개 내외 선정) 2026. 8월 중	▶	<b>Round1</b> ·온라인 PT대회 2026. 9월 중	▶	<b>Round2</b> · 대면 PT대회 (총 5개 내외 선정) 2026. 10월 중	▶	<b>Round3</b> · 대면 PT대회 (사제품 지원 결정) 2026. 11월 중
---	---	--	---	---	---	--

※ 평가 세부 일정 및 결과 등은 해당 기업에게 별도 안내 예정

### □ 평가방법 및 내용

- ① 서면평가 : 사업계획서 및 제출하신 증빙자료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시행, Round1 진출 기업(팀) 확정
  - 선정규모 : 25개 사 내외 선정
  - 평점산출 : 사회적 평가점수 × 40% + 혁신성장성 평가점수 × 60%
  - 선정방법 : 위원회 최종평점 평균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

#### <평가기준 표1. 사회적 평가기준>

대항목	목적	중항목	소항목(평가항목)	배점
사회적 가치 지향성 및 미션	사회적가치 추구와 관련된 기업가정신, 설정된 미션 평가 (Social Entrepreneur- ship and Mission)	경영주 사회적가치 지향성	S01. 사회적 기업가 정신 수준	14점
			S02. 사회적가치 창출 경험 수준	6점
		기업의 사회적 미션	S03. 사회적 미션의 구체성과 차별성	10점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 및 실행체계	사회문제해결과 사회적가치 창출과정 즉, 보유하고 있는 내·외부의 역량과 자원 그리고 실행체계 평가 (Resource and Activities)	사회적가치 창출 역량	S04. 사회적 미션과 사업 활동의 연계성	12점
			S05. 수행조직 구성의 적절성	8점
			S06. 외부자원 동원 역량과 파트너십 구축정도	6점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실행체계	S07. 소셜비즈니스모델의 우수성	8점
			S08. 소셜비즈니스모델의 확산성	8점
			S09.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운영 수준	8점
사회적 성과	실제 창출된 (창출 가능한) 사회적 성과 평가 (Social Impact)	사회적 성과 창출의 효과성	S10. 사회적 성과 창출 수준 (가능성)	8점
			S11. 사회적 성과 창출의 효율성	6점
		사회적 성과 창출의 우수성	S12. 사회적 성과 창출의 지속성	6점
<b>합 계</b>				<b>100점</b>

<평가기준 표2. 혁신성장성 평가기준-제조업>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평가항목)	배점
경영주 혁신역량	기술지식 수준 및 경험 수준	IM01. 경영주 기술지식 수준	6점
		IM02. 경영주 동업종 경험 수준	8점
	경영능력	IM03. 혁신적 기업가정신	8점
		IM04. 경영관리 능력	6점
기술의 혁신성	기술개발 역량	IM05. 기술개발 전담인력 현황	8점
		IM06. 기술개발 실적	6점
	기술의 우위성	IM07. 기술의 완성도(TRL)	6점
		IM08. 기술의 차별성	8점
성장성	시장환경 및 제품 경쟁력	IM09. 시장의 성장성 및 전망	10점
		IM10. 제품의 비교우위성	12점
	사업추진의 타당성	IM11. 사업계획의 타당성	12점
		IM12. 사업인프라 확보 수준	10점
합 계			100점

<평가기준 표3. 혁신성장성 평가기준-서비스업>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평가항목)	배점
경영주 혁신역량	혁신역량 및 전문성	IS01. 혁신적 기업가정신	8점
		IS02. 경영주 동업종 경험 수준	8점
	경영능력	IS03. 경영관리 능력	6점
서비스 혁신성	서비스 개발역량	IS04. 혁신문화	8점
		IS05. 서비스개발 전담인력 현황	6점
		IS06. 서비스개발 실적	6점
	서비스의 혁신성	IS07. 서비스의 완성도	6점
IS08. 서비스의 유용성		8점	
성장성	시장환경 및 서비스 경쟁력	IS09. 시장의 성장성 및 전망	10점
		IS10. 서비스의 비교우위성	12점
	사업추진의 타당성	IS11. 시장확보 가능성	10점
		IS12. 사업계획의 타당성	12점
합 계			100점

② Round1(발표대회) :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발표자료 작성 후 온라인 발표를 통한 제안 기업(팀)의 기술·서비스 역량 평가

- 평점산출 : 사회적가치 추구도(10점)+경영관리(30)+제품·서비스 경쟁력(60)
- 선정방법 : 위원회 최종평점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

**<평가기준 표4. 발표대회 평가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회적 가치 추구도 (10)	사회적 기업가 정신 수준	대표자의 사회문제 해결 의지 및 사업참여 의지 정도	4점
	사회적 성과 창출의 지속성	투자 및 외부자원 유치 전략	6점
경영관리 (30)	기업가정신	시장조사·분석 능력, 기술·서비스 개발 계획 및 자기자본 조달계획	15점
	경영관리 능력	중장기사업계획, 인력확보 및 네트워크구축 방안, 조직문화 구축계획	15점
제품· 서비스 경쟁력 (60)	해당 시장의 성장가능성	최소 3년간의 동업종 시장성장을 및 향후 시장전망 분석 제시	20점
	제품경쟁력	제품·서비스 차별점, 가격경쟁력, 품질 만족도, 예상 판매량, 그 외 강점 제시	20점
	사업인프라 확보 수준	필요 설비 및 생산 인력 수준 (동일 업종 대비 현재 기업(팀)수준 제시)	20점
<b>합 계</b>			100점

③ Round2(시장성검증): 발표평가 전 시장성 조사를 통한 제안 기업(팀)의 고객 수요 및 사업화 가능성 평가

- 선정규모 : 총 5개사 내외 선정
- 평점산출 : 고객·수요처 정의, 문제정의 적합성, 시장 검증 방법의 적합성, 사업모델 개선도, 비즈니스 실행 가능성 등
- 선정방법 : 위원회 최종평점 평균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

**<평가기준 표5. 시장성검증 발표대회 평가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고객·수요처 정의	고객·수요처의 명확성	제품·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잠재고객, 수요기업, 공공기관 등 목표고객 또는 수요처의 구체성	20점
시장 검증 방법의 적합성	시장성 조사 수행 여부	고객 인터뷰, 설문조사, 사용자 테스트, 수요처 의견확인, 전문가 검토 등 기업유형에 적합한 시장성 조사의 실제 수행 여부	30점
문제정의 적합성	고객·수요처 반응의 구체성	고객의 문제, 도입 필요성, 이용·구매 의향, 개선 요구사항 등 시장수요의 구체적 확인 여부	30점
사업모델 개선	조사결과 반영 및 실행가능성	시장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품·서비스, 고객군, 가격, 판로, 수익모델, 실증계획 등의 개선 노력	20점
<b>합 계</b>			100점

④ Round3(해커톤) : 시제품(제품·서비스)을 통한 화성시 사회문제 해결 방법과 기대효과를 구체화하고, 시제품 개발계획과 실증 실행계획 도출 고도화

○ Round3(해커톤) 산출물 : 실증 실행계획, 사회적가치 측정지표, 시제품 개발계획, 예산 집행계획, 최종 발표자료 등

○ 선정규모 : 5개 사 내외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제품개발비 차등 지원  
- 최저 10,000천원 ~ 최대 30,000천원 지원금액 결정

※단, 최대 30,000천원은 기업별 최대 지원 가능 금액으로서 자동 보장되는 금액이 아니며,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대 지원금의 범위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음

○ 평점산출 : 정량 및 정성평가 100점

○ 선정방법 : 위원회 최종 평점평균을 통해 참여 기업(팀) 최종 순위 결정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최종 순위 결정

<평가기준 표6. 해커톤 평가기준>

심사방식	심사지표	지표설명	배점
정량 및 정성평가	화성시 환경·사회문제 해결 적합성	1.시제품과 화성시 환경·사회문제의 연계성 2.문제 정의의 구체성 및 시제품의 환경·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20점
	Round2 시장검증 결과 반영계획	1.Round2 검증 결과의 시제품에 대한 고객 또는 수요자의 요구 반영 여부 2.기존 제품의 보완·개선에 대한 시제품 반영 계획의 적절성	10점
	시제품 실증 실행계획의 구체성	1.실증 대상, 장소, 방법에 대한 구체성과 실증 가능여부 2.협력기관 또는 실증 파트너 연계 여부 3.위험요인 파악과 대응방법의 적절성	25점
	사회적가치 측정지표의 적절성	1.사회적가치 지표와 문제 해결 목표의 연계성 2.제안 지표의 측정 가능성 3.제안 지표의 성과가 실제 사회문제 해결의 성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5점
	시제품 개발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의 적정성	1.시제품 개발 목표와 범위의 적정성 2.개발 일정 및 단계의 타당성 3.예산 규모와 산출근거의 적합성	15점
	성장가능성 및 사업화 가능성	1.시제품의 사업 확장(시장 진입) 가능성 2.시제품 수익모델 또는 지속 운영방안의 적정성 3.향후 투자유치 및 후속지원 연계 방안	15점
합 계			100점

###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창업예정인 당사자 및 기업대표가 신청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 될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화성특례시 소셜벤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화성산업진흥원의 기업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보조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취해짐
  -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화성산업진흥원 보조금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붙임 1. 보조금 사업 제재조항 참조)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원,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 (협약체결) 불가
  - ※ 2026년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문(2025.12.19.) 내 사업 기준 단, 2026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 (주의) 2개 이상 2026년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동 사업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동 사업 신청자는 2026년 동 사업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 불가

##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 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 자격 확인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계획서 관련 기업(팀)의 실적 증빙자료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전 평가 과정에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지 않음
- 평가기관(화성특례시)은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 기업(팀)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 선정 후 유의사항

- 최종 선정 기업(팀)은 2027. 3. 31(수)까지 화성특례시 소셜벤처 창업지원 공간 입주 완료, 법인 설립, 소셜벤처 판별을 완료해야 함. 미이행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해당 요건 완료 시, 지원사업(시제품 개발비 지원, 엑셀러레이팅) 참여 가능
- 최종 선정 기업(팀)은 시제품 개발비를 신청하기 위해 보조금 사용 계획서를 화성산업진흥원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화성 특례시·화성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기업(팀)은 화성특례시·화성산업진흥원과 작성하는 화성특례시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협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선정 기업(팀)에게 있음
- 시제품 개발비는 화성산업진흥원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사·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시제품 개발비가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으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 제한 및 시제품 개발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

- 화성특례시와 화성산업진흥원은 선정된 기업(팀)의 사업비 횡령, 편취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문의사항 연락처**

- 화성특례시 기본사회담당관 사회적경제기획팀 조운상 전문관  
(031-5189-6155, dscreen01@korea.kr)

제재 및 환수(지급불가)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input type="checkbox"/> 고의로 사업지원금을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고서 또는 사업결과물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포함	5년	전액 환수(미지급)	-
<input type="checkbox"/>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보고서 등 제출자료와 동일·유사한 제출 자료 (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3년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 협약기간 내 무혐의 또는 소취하가 확정된 경우 잔여사업비 사용가능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규제중인 경우			일시중단
<input type="checkbox"/>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 자격에 부적격함이 확인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고의성이 있는 경우	1년	전액 환수(미지급)	-
<input type="checkbox"/> 고의성이 없는 경우		잔액 환수(미지급)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1년	전액 환수(미지급)	-
<input type="checkbox"/> 현물을 허위로 대응한 경우	3년	전액 환수(미지급)	
<input type="checkbox"/> 진흥원으로부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미지급)	-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 미 이행 및 휴·폐업한 경우	1년	전액 환수(미지급)	-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내에 사업계획(창업포함)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대표자의 사망,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이거나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휴·폐업한 경우		잔액 환수(미지급)	-
<input type="checkbox"/> 질병 등 국가 재난상황에 따른 영향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계획 미이행 또는 중단·포기·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 창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 이상 지체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진흥원의 서류제출 및 프로그램 참석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내 사업비의 복원 요청에 2주 이상 불응한 경우			경고
<input type="checkbox"/> 진흥원이 요청하는 각종 보고서에 대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창업기업 대표자가 2주 이상 연락 두절인 경우			주의
<input type="checkbox"/>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지원금을 핵심수행과제 해결 외로 집행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반납(불인정) 및 적정용도로 집행가능	개선요청
<input type="checkbox"/> 협약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해당금액 환수(미지급)	개선요청

\* 협약기간 내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단', 협약기간 종료 후 제재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패' 처리  
 \* 창업기업 대표자가 사업비 환수대상일 경우 사업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주의 2회 = 경고 1회(협약기한 내)  
 \* 정해진 기간 내 사업지원금 환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 진행  
 \* 상기 항목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7년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  
 \* 사업비 사후정산 사업의 경우, 지급 이전 제재사항 발생시 전액환수 사항은 전액 미지급으로 처리하며, 잔액환수 사항은 제재사항 발생시점 이전 사용금액만 인정됨.  
 \* 단, 참여 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거나 진흥원 자체 판단이 어려운 사항의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운영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연번	대상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희주점업	56211
2	무도유희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끝.